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84
----------	------

2020년 6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김춘례, 김호진 의원
- 나. 발의일자 : 2020년 5월 19일
- 다.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 라. 상정결과 :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년 6월 16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춘례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서울시의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서울 브랜드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3기 위원회가 구성('18.8.29)되어 운영 중임.
- 향후 서울시 도시 브랜드의 꾸준한 관리와 발전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 역할이 필요한 만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서울브랜드위원회를 5년 단위로 재평가하여 위원회 존속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따라서 위원회의 존속기한 5년을 조례에 명시하고, 차기 위원 위촉 전에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안 제5조제4항)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3)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동 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부터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으로 구성·운영 중인 서울브랜드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 김춘례·김호진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음.
- 서울시는 동 조례 제3조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서울 브랜드의

개발 및 런칭을 위해 2014년 10월 서울브랜드위원회의 전신인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5년 12월 서울 브랜드 ‘I·SEOUL·U’를 개발하였음¹⁾.

서울시는 서울 브랜드의 개발과 동시에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도시브랜딩 자문 및 서울 도시브랜드 포럼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서울브랜드위원회’를 2016년 5월 19일 동 조례 제5조를 개정하여 5월 20일부터 1년간 제1기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였고, 2018년 8월부터는 제3기 위원회(붙임1 참조)가 운영 중임.

서울브랜드위원회는 2016년 구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울 브랜드 인지도 및 호감도 상승에 공헌해왔으며, 매년 개최한 서울 도시 브랜드 포럼의 중추적인 역할로 포럼의 방향 설정 및 학술기획·발제 등을 주도해왔음. 또한, 위원회를 통한 도시브랜딩 자문(2019년까지 총 42건), 신규브랜드 개발 자문(2020년까지 75건), 아이서울유 파트너스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서울 브랜드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과 개발을 도모해왔음.

〈 연도별 서울브랜드 호감도 및 인지도 조사결과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지도	63%	66.3%	84%	86.6%
호감도	52.8%	57.1%	70.7%	73.3%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서울브랜드위원회의 현재까지 성과와 서울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및 도시브랜드 강화, 브랜드 정책 및 민관협업을 통한 서울 브랜드의 관리·소통

1) ‘I·SEOUL·U’의 서울 브랜드 등록은 2016년 5월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개정(제3조제2호)에 따라 완료되었음.

창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존속 필요를 우리 위원회에 주장해왔음.

- 한편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규정한 바, 동 지침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할 것과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제한하였음²⁾.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이에 따라 2016년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구성된 서울브랜드 위원회는 존속기한이 5년차인 2021년 5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문을 수정하여 존속기한 규정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동 조례 제5조제4항은 서울브랜드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성과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바, 2018년 5월 이미 한 차례의 존속기한이 완료³⁾되었고 현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연장시한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2)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하려면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규정됨.

3)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은 동 조례 제5조4항에 규정된대로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2018년 3월 ‘존속유지’로 결론내림.

존속기한 규정 변경은 시의 타당하다고 사료됨.

- 시민소통기획관은 동 개정안이 통과하여 서울브랜드위원회가 2024년 12월까지 존속이 확정될 경우, 실질적인 홍보·마케팅 자문기구로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의견을 밝혀옴.

이에 따라 현재보다 위원회의 전문가 분야는 확대하고 위원 수는 하향 조정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특히 서울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서울시의 세계적인 위상도 도모하겠다고 밝힘.

〈 서울브랜드위원회 향후 운영계획 〉

서울브랜드위원회(현재)		→	서울브랜드위원회(조례 개정 이후)	
전문분야	광고 홍보 디자인 문화 언론 법률 경제		전문분야	광고 홍보 디자인 문화 언론 법률 경제 (추가)글로벌 마케팅 (추가)글로벌 브랜드 (추가)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위원명수	29명	위원명수	20명 이내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1)

서울브랜드위원회 명단

연번	분야	직위	현직	성명	주요경력
1	당연직	위원장 (공동)	정무부시장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2	광고분야	위원장 (공동)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김유경	한국광고학회 회장 국가브랜드진흥원 이사
3	디자인분야	부위원장	선문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장훈중	금강기획 광고디자인 TBWA 코리아 광고디자인 HSAAd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4	광고분야	부위원장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최은정	앤더모스트 컨설팅
5	광고분야	위원	여행작가 (트래블셀러터)	이화자	(주)대흥기획, (주)제일기획 카피라이터
6	광고분야	위원	청운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김종성	대한산업미술가 협회회원 대한지적공사 광고홍보물 심의위원
7	문화분야	위원	서울특별시의원 (문화체육관광위)	김춘례	제5~7대 성북구의회 의원
8	문화분야	위원	서울특별시의원 (문화체육관광위)	김호진	서대문구의회 의장
9	광고분야	위원	밸류바인 대표	구자룡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10	광고분야	위원	송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김민기	한국광고연구원 대표이사
11	광고분야	위원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김병희	한국 PR학회 회장
12	언론분야	위원	미국 nbc 프로듀서	김성희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기자
13	광고분야	위원	인큐브랜드 대표	김인겸	도시마케팅, 컴퍼니 대표

연번	분야	직위	현직	성명	주요경력
14	광고분야	위원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김정현	노동부 정책홍보 자문위원
15	법률분야	위원	노소라 법률사무소 대표	노소라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등 판사
16	광고분야	위원	계명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류진한	한국광고PR실학회 부회장
17	광고분야	위원	메타브랜딩 대표	박항기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 능률교육 마케팅 부문 이사 한국인삼공사 브랜드마케팅자문
18	광고분야	위원	워드컬처 대표	이경선	서울종합예술학교 겸임교수
19	경제분야	위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동훈	미국 콜롬비아 비즈니스스쿨 객원 연구원
20	디자인분야	위원	홍익대 시각디자인학과교수	이연준	GAID Associates Inc.,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Interbrand Korea, PM
21	디자인분야	위원	상명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이원제	한국철도공사 공사 디자인 실무위원
22	미디어분야	위원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이종혁	LOUD 캠페인 디렉터
23	디자인분야	위원	호서대 문화기획학과 교수	한젼마	코트라 아트콜라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24	언론분야	위원	(전)한국기자협회 부회장	손대선	중부일보, 뉴시스 기자
25	홍보분야	위원	서울시의회 의장비서실장	홍성훈	남북경협포럼 홍보위원장
26	언론분야	위원	서울셀렉션 서울 편집장	로버트 퀼러	
27	당연직	위원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정책기획관
28	당연직	위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정책기획관
29	당연직	위원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이사	최경란	국민대학교 교수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춘례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484
----------	------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9일
발 의 자 : 김춘례, 김호진 의원(2명)
찬 성 자 : 김인호, 조상호, 이승미,
성흠제, 최기찬, 이영실,
강동길, 최정순, 경만선,
박기재, 문병훈, 안광석,
노승재, 김소영, 이경선,
김태호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서울시의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서울브랜드위원회
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3기 위원회가 구성('18.8.29.)되어 운영
중임.
- 향후 서울시 도시 브랜드의 꾸준한 관리와 발전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 역할이 필요한 만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서울브랜드위원회를 5년 단위로 재평가하여
위원회 존속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따라서 위원회의 존속기한 5년을 조례에 명시하고, 차기 위원 위촉 전에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안 제5조제4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구성일로부터 2년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 ③ (생 략)</p> <p>④ <u>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구성일로 부터 2년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하 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p>	<p>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 ----- -----.</p>